

1. 개정이유

군무원 교육 필수과정 도입과 소집 및 온라인 교육의 합산 적용 등 교육 제도 변경에 따라 직급별 필수과정을 정하여 필수과정 이수시만 교육점수를 인정하도록 개정하고,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비율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 일부 면제되는 시험 과목에 대해 명문화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전산, 환경 직렬 응시를 위한 자격증 요구조건을 국가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군무원 인사 관리 및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제도 개선(안 제25조)

군무원 교육은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직급별 2주 이상 평가 있는 교육 이수시 교육점수를 인정하였으나,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직급별 필수과정을 정하여 필수과정 이수시만 교육점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직급별 지정 필수과정 외 소집 및 온라인 교육을 합산하도록 개정

나.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 공개(안 제28조)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 예정인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이 승진후보자 명부 전체 등재 인원 수 대비 당해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비율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

다.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일부 자격증 폐지(안 별표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를 위해 관련 분야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 중 전산, 환경 직렬의 자격증 요구조건을 국가공무원 시험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개정

라.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중 지역구분 모집시 면제과목 명문화(안 별표 3)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중 지역구분 모집 시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는 과목에 대해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두 번째 과목으로 명문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3. ~ '25. 1. 1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부패영향평가 등 요청 :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 결과 수정 필요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계 서류도”를 “회보서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직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인 교육훈련만”을 “각 군 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직급별로 지정한 2주 이상의 필수교육훈련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은 교육훈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필수 과정 외 교육훈련(나라배움터 원격교육 포함)을 이수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합산한다”를 “합산한다. 원격교육기간 산정은 8시간 누적 시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따른 원격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4항에 따른”을 “따른”으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전단”을 “전단”으로 한다. 제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군무원에게 전체 등재 인원 수 대비 당해 일

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비율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별표 2 시설 직군 및 환경 직렬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정보통신 직군의 직렬란 중 “전산 및 사이버”를 “사이버”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7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영 제26조에 따라 일부면제할 수 있는 과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명시된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두 번째 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8조 개정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전력 조회) ① (생략)	제10조(전력 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u>관계서류도</u>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 ----- <u>회보</u> <u>서도</u> -----.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4급 이하의 <u>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u> 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 --- <u>일반군무원</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u>해당 직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인 교육훈련만</u> 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 ----- <u>각 군 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직급별로 지정한 2주 이상의 필수교육훈련만</u>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3점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육훈련(이하 “원격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훈련기간은 원격교육훈련시간 8시간 누적 시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 원격교육훈련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3점
2. 원격교육훈련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2점
3. 원격교육훈련기간이 3일 이

② -----
---- 필수 과정 외 교육훈련(나라배움터 원격교육 포함)을 이수한 -----

----. -----

합산한다. 원격교육기간 산정은 8시간 누적 시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상 5일 미만인 경우: 1점

④ (생 략)

⑤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3항에 따른 원격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4항에 따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훈련성적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전단에 따라 인정되는 평정점을 합산한다.

⑥ (생 략)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 ⑥ (생 략)
<신 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
----- 따른

-- 제2항 또는 제3항-----

----. -----

-- 전단-----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군무원에게 전체 등재 인원 수 대비 당해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비율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
(제13조의2 관련)

직군	직렬
행정	(생 략)
시설	환경
정보통신	전산 및 사이버
합정	(생 략)
보건	(생 략)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비고>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
(제13조의2 관련)

직군	직렬
행정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정보통신	사이버
합정	(현행과 같음)
보건	(현행과 같음)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비고>

1.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7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영 제26조에 따라 일부면제할 수 있는 과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명시된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두 번째 과목으로 한다.